

2017년도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(특화형) 신청 공고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7 - 128호

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경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「2017년도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(특화형)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(예비)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7. 6.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

1 사업 개요

가. 사업 목적

- (예비)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써 자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

나. 17년도 사업 추진 방향

- 기초컨설팅 지원금액 한도를 상향(3백만원→5백만원), 최대 지원분야를 확대(2개분야→4개분야)하여,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강화
- 전문성을 요하는 법률/법무 분야에 상시상담기관을 신설하여 상시적인 자문지원 강화
- 지속성장형 컨설팅 건당 지원규모 확대(지원건수 축소) 및 판로 지원 목적에 특화된 기획형 컨설팅(특화형 컨설팅) 대폭 확대를 통해 성과지향형 컨설팅지원 체계 강화
- * 주요변경사항: 전문컨설팅 지원대상 확대(사회적기업→(예비)사회적기업), 지원금액 연간/누적 한도폐지(단, 예비 사회적기업은 1,000만원 이내)

< 2017년 (예비)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체계 >

구분	세부 유형	지원대상	컨설팅 내용	비고
기초 컨설팅	경영코칭	(예비)사회적기업	인사/노무, 회계/세무, 법률/법무, 멘토링(일반 경영 분야 등)	연중 수시 신청 [접수중]
전문 컨설팅	지속성장형	(예비)사회적기업	경영기술 관련 전 분야	연 2회(2월, 4월) [신청마감]
	공동형	2개 이상의(예비)사회적기업 (최대5개)	업종/지역의 공동 문제	연 2회(2월, 4월) [신청마감]
	특화형	(예비)사회적기업	특정 3개 분야	[접수중]

- * (기초컨설팅) (예비)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사·회계·법무 분야의 경영코칭 (Coaching)을 제공하여 기본시스템 구축 지원뿐만 아니라 선배 사회적기업가들의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동종업종의 네트워킹 지원 유도
- * (지속성장형, 공동형) 성장 및 자립 단계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과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제공하여 자립 가능성 제고
- * (특화형 컨설팅) 사회적기업이 공통 수요 보유한 특정 컨설팅 주제를 진흥원에서 기획해 역량을 보유한 컨설팅 기관을 선정해 컨설팅 지원

[참고] 특화형 컨설팅 주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공시장 진출 컨설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(MAS입점지원 컨설팅) -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, 제안서 작성(문화, 예술분야) - 학교장터(S2B) 또는 학교급식 등 교육시장 진출 컨설팅 * 국내외 주요 상품 및 서비스 품질 인증 지원 (HACCP, KC 등) * 홍보마케팅 컨설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적기업의 고유의 가치/의미를 전달하는 브랜드 스토리 개발 컨설팅 - 온라인(페이스북, 트위터 SNS등, 자사웹사이트) 계정을 활용한 홍보 및 활용

다. 지원 조건

구분	정부지원금	기업부담 비율	수행기간
기초 컨설팅	경영코칭 연간 최대 5백만원 (최대 3회(3개년))	집중코칭의 경우 해당 금액의 10%	최소 1개월
전문 컨설팅	지속성장형	최대 5회	최대 6개월
	공동형	※금액한도 없으나,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간 1,000만원 한도	
	특화형	※공동형은 기업별 분담비율에 따라 적용	

※ 신청기업은 당해연도 사업의 1개 과제만 지원 가능

라. 지원제외 대상

-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·중복으로 판명된 경우.
- **당해연도 경영컨설팅 기 수진기업**
-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
 - * 기초컨설팅의 경우 최대 3회(3개년)(연간 500만원 한도), 전문컨설팅의 경우 최대 5회(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,000만원 한도)
- 변호사, 노무사, 회계사, 변리사,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
-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
-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(컨설턴트)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
-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 사회적기업
-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
 - *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
 - *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
 - *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
 - *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 - * 단,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

마. 선정·평가

구분		선정 절차	비고
전문컨설팅	지속성장형	● 신청·접수 → 대면평가 → 선정·협약	대면평가
	공동형		
	특화형	● 수행컨설팅기관 선정 → 신청·접수 → 진단·상담·평가 → 선정·협약	서류, 진단, 상담을 통한 평가

2

전문컨설팅[특화형]

□ 신청·접수

○ 기간: 공고일 ~ 2017.7.5(수)까지

※ 접수 되는대로 수시진단·지원대상 결정·컨설팅 착수 예정이므로 빠른 신청 요망(단, 브랜딩 및 홍보지원 컨설팅은 7월 이후 컨설팅 착수 가능)

○ 방법: 우편 또는 직접 접수

※ 우편물은 반드시 공고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하여야 함

※ 주소: (13292)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57, 8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전문컨설팅 담당자 앞

□ 사업수행기간 : ~ 2017년 11월

□ 지원대상 및 내용 : 예비,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

컨설팅 주제	컨설팅 내용	지원기업수
공공시장 진출지원	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·구매 활성화 화를 위한 컨설팅 수행	40개소
시장확대 지원	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유통채널 진출을 위한 품질 인증·자격 취득 지원 및 준비과정 컨설팅 수행	40개소
브랜딩 및 홍보 지원	브랜드 스토리, BI, CI 진단·개선·신규 개발 및 자체 홍보 지원	20개소

※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 사업의 1개 과제만 지원 가능

※ 기업별 지원 필요 범위에 따라 지원기업 수는 상이할 수 있음

□ 세부 지원 내용

1) 공공시장 진출 지원

○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제반 컨설팅 수행

구분	분석자료	주요내용(안)
공고서 분석	- 조달물자구매공고서	- 계약품명, 계약기간, 품질시험, 인도조건분석 - 납품기한, 계약방법, 참가자격분석 - 가격협상방법분석

구분	분석자료	주요내용(안)
목록등록	- 조달물자 구매공고서	- 목록이미지, 식별번호 부여방법, 속성분석
소액수의 계약	- 비즈니스 재정립 - 사업제안서 - 사업 포트폴리오 및 PT 자료	- 공공시장용 모델 재정립 - 공공시장용 사업제안서 작성 컨설팅 - 공공시장용 포트폴리오 구성지원 - 공공시장용 PT 제안 발표 지원
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	-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 - 직접생산증명서, 면허 및 허가증 - 사용인감 및 전자인증서, 지문인식등록증	-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증 신청 및 수정 - 공고서에 따른 참가자격에 맞게 등록
사전심사 및 적격심사	- 신용평가 등급확인서, 납품 실적(세금계산서 등) - 기술, 품질인증서, 기술인력 자격증 - 공장등록증, 교육이수인증서 - 과거 조달판매실적, 계약이행실적평가서	- 신용평가 등급확인서, 납품실적 (세금계산서 등) - 기술, 품질인증서, 기술인력 자격증 - 공장등록증, 교육이수인증서 - 과거 조달판매실적, 계약이행실적평가서
규격서 작성 및 협상제출	- 제품시방서, 도면, 재질표 - 매입세금계산서, 시험성적서 - 품질인증서(ISO9001 등) - 제품설치현장 및 생산공장방문	- 조달청 협상품목제출 - 품명별 표준 규격서 작성 - 총계약금액 및 계약수량 결정 - 인도조건 및 납품조건 결정
가격자료 분석 및 투찰	-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표 - 매출장(최소 3개월이상) - 원가분석자료, 물가지정보, 견적서 - 과거 MAS계약서 및 경쟁사 계약단가표	- 조달청 가격협상자료 제출 - 거래내역 총괄표 작성 - 규격별 거래내역서 작성 - MAS계약 가격 비교표 작성 - 신뢰서약서 작성 및 전자투찰
계약서 제출방법 및 조달판매방법 안내	- 조달청 계약서(초안) -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- 다수공급자 특수계약조건 -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	- 조달청 MAS계약서(초안)제출방법 - 조달청 MAS판매 방법 설명 - 인지세, 보증보험 처리 방법 - 판매후 품질심사처리 방법 - 2단계 경쟁 방식 설명 - 사후관리 유의점 설명
공공구매 온라인몰 등록 (해당기업)	- 종합쇼핑몰등록 - 벤처나라등록 - 전통문화상품몰등록 - 학교장터(S2B)등록	- 상품등록 및 DB 제공 - 등록상품 DB 개선 (사진 및 이미지(동영상) 품질 제고) - 기업 홍보물 개선

※ 위 컨설팅 내용은 예시로 신청 기업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) 시장확대 지원 컨설팅

- (예비)사회적기업 제품/서비스의 시장 확대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인증자격 취득지원 제반 컨설팅 수행

구분/자격	분석자료	주요내용(안)
유통채널 진출시 필요사항 (식품류 예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등록증, 영업신고증, 공장등록증 - 품목제조보고서 - 자가품질검사성적서 - 포장재성적서 - 영양성분검사성적서 - 수질검사성적서 - 개별성분성적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등 안내 - 각 유통 채널 입점 지원 - 관계법령 해설 및 법적 표시 사항 지도
식품류 인증 취득 예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HACCP(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 - 친환경인증서(유기농, 무농약, 무항생제) - GMO(구분유통증명서) - 지리적표시, 전통식품 인증 -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- PL 보증서 - 수질검사성적서 - 유통기한설정사유서 - 자가품질검사성적서 - 표시사항, 시설기준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등 인증과정에 필요한 행정 및 서류 작성 지원 - 관계법령 해설 및 법적 표시 사항 지도
공산품 관련 인증 취득 지원 예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전기용품 안전인증 -에너지 효율 등급 -KC 안전품질표시 -KS 제품인증 -Q마크(품질인증) -ISO 인증 -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-공인기관 검사성적서 -표시사항(법적 품질, 제품표시/표현) -제품 품목별 표시 항목 주의 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등 인증과정에 필요한 행정 및 서류 작성 지원 - 관계법령 해설 및 법적 표시 사항 지도
공동사항 표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표준규격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구 : 품목, 원산지, 품종, 등급 등 -권장표시사항(법적 품질, 제품표시/표현) -제품 품목별 표시 항목 주의 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증 자격 취득전 표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지도

※ 위 컨설팅 내용은 예시로 기업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) 브랜딩 · 홍보 지원 컨설팅

- (예비)사회적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브랜드 스토리, CI, BI, 홍보물에 대한 진단·개선 컨설팅
- 고객 및 시장분석, 홍보채널 운영상태 진단·분석을 통한 기업 별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
- 자체 웹사이트, SNS, 모바일 등을 통한 홍보 활성화 지원

□ 기업부담금 산출방식

총사업비	비율	최대 기업부담 금액	산출방식
500만원 이하	10~40%	50만원	컨설팅 계약금액 × 10%
500만원 ~ 1,500만원 이하		250만원	{50만원 + (500만원 초과금액 × 20%)}
1,500만원 ~ 2,500만원 이하		550만원	{250만원 + (1,500만원 초과금액 × 30%)}
2,500만원 초과		산출식에 따름	{550만원 + (2,500만원 초과금액 × 40%)}

- ※ 세부 지원 금액은 진단 및 평가 과정에서 결정되며, 기업부담금 별도 부담
- ※ 단, 예비사회적기업은 1,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
□ 우대 가점: 최대 5점 부여

점수	가점 항목
1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신청기업(기본공시) ■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기업 ■ 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신청기업 ■ 신청당시 유급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신청기업
2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신청기업(확장공시) ■ 광역 및 지자체·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포상을 받거나 공모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
3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진흥원 혹은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과정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

* 단,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

□ 선정방법 : 제출서류 및 진단·대면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 결정

※ 접수 되는대로 수시 진단·지원 대상 결정·컨설팅 착수 예정

※ 컨설팅 지원은 진흥원에서 선정한 컨설팅기관을 통해 이루어짐

□ 제출서류

-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 및 회사소개서[별지 제2호 서식] 각 1부
- 사회적기업인증서/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2016년도 재무제표 1부
-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[별지 제3호 서식]
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[별지 제4호 서식]
- 지원 신청 제품/서비스 카탈로그 또는 설명서 1부
- 품질인증서/특허 등 제품·서비스 경쟁력 증명 서류(보유기업만 제출)
- 기타 우대가점 서류

□ 문의처 및 연락처

기관명	소관부서	연락처	비 고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	판로지원팀	(전화) 031-697-7832 (팩스) 031-697-7854	

* 전문컨설팅(특화형)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,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

참고 1

기초컨설팅 신청(연중 수시 신청접수)

□ 신청·접수

○ 기간: ~ 11. 30.(목) 까지
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○ 방법: 기초컨설팅 운영지원기관에 기초컨설팅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제출

□ 지원대상 및 내용 : (예비)사회적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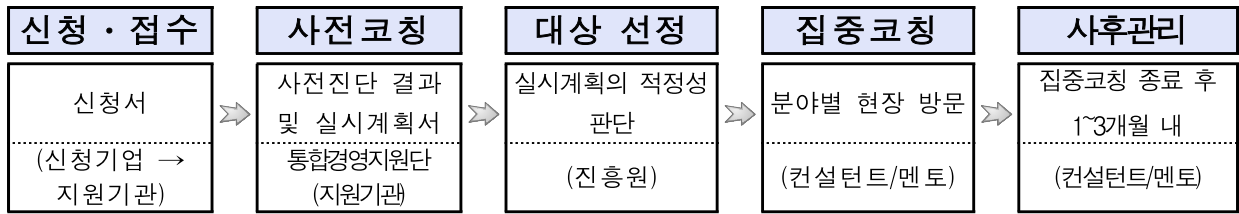
구분	지원대상	컨설팅 내용
경영코칭	(예비)사회적기업	인사/노무, 회계/세무, 법률/법무, 멘토링(일반 경영 분야 등)

- * (인사/노무) 근로기준법·취업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무관리체계 정비와 관리방법 제시,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고의성 없는 부정수급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도, 기타 인사/노무 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
- * (회계/세무) 지원금 사용내역 확인과 기업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관리 지도, 재무제표 검토, 원천세 증빙서류 점검, 세무 관련 신고 내용과 신고 절차 교육, 기타 회계/세무 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
- * (법률/법무) '법률법무'분야는 계약 체결(이 때, 근로 계약은 제외한다.), 지적재산권,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등 법률·법무 애로 해소 지원, 기타 법률/법무 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(※ 상시 법률자문 가능한 전문상담기관 신설)
- * (멘토 영역) 전반적인 기업경영의 환경 분석 및 가용자원 연계, 선발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애로 대처법 및 판로개척, 마케팅 등의 노하우 전수,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지식, 경험,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법 안내, 새로운 사업모델 및 소셜미션 정립, 동종/업종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역할, 기타 멘토가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□ 지원 조건

구분	정부지원금	기업부담 비율	수행기간
경영코칭	연간 최대 5백만원 (최대 3회(3개년))	집중코칭의 경우 해당 금액의 10%	최소 1개월

□ 추진 절차



* 사전코칭(사전진단)을 통해 집중코칭 실시 여부/지원 규모 등 판단

□ 법률/법무분야 전문상담기관 운영

- 지원기관: 유한책임회사 더함
- 지원대상: (예비)사회적기업, 기초컨설팅 운영지원기관
- 지원내용: 기업운영 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연간 20시간 이내 상시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(기업 부담 별도 없음)
 - ※ 상담·자문 사항: 사업 적법성, 계약서 작성 및 검토, 자금조달(투자유치), 지적재산권(저작권, 상표권 등), MA(합병, 분할, 영업양수도, 자산양수도 등), 개인정보보호, 분쟁대응, 주주총회·이사회 등 운영, 근로관계 등 기업의 운영시 발생하는 각종 법률이슈에 대한 상담 및 자문
 - ※ 단, 연간 2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범위의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자부담 할 수 있음
 - ※ 예산소진 시, 조기 종료될 수 있음
- 상담방법: 전화, 온라인(e-mail)
 - ※ 문의처: (유한책임회사 더함) ☎ 02-6384-5500/ law@ikosea.or.kr
- 기타: 상시자문 외 집중적인 코칭이 필요한 법률/법무서비스는 지역별 기초컨설팅 운영지원기관 경영통합지원단에 의뢰

□ 문의처 및 연락처

구분	기관명	주소	연락처	비고
-	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, 8층 판로지원팀	031-697-7837	총괄
서울	(사)한국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조합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-39, 200(충정로 2가, 본관)	070-7600-5100	운영지 원기관
경기	(사협)사람과 세상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(파장동, 덕성빌딩 2층)	070-4763-0130	
인천	(사)시민과대안연구소	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71, 종로빌딩 302호	032-715-5561	
강원	(사)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	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	033-749-3360	
대구	(사)커뮤니티와경제	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82 2층	053-956-5001	
경북	(사)지역과 소셜비즈	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	053-956-5002	
부산	(사)사회적기업연구원	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	051-517-0266	
울산	(사협) 울산사회적 경제지원센터	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149(태화동 956), 2층	052-267-6176	
광주	(사협)살림	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	062-383-1136	
전북	(사)전북사회경제포럼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122-11(엠플러스빌딩 301호)	063-251-3388	
전남	(사)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	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석현빌딩 3층	061-282-9588	
제주	(사)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박성내동길 55	064-726-4843	
대전/ 세종	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(사협)	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0번길 9, 2층	042-223-9914	
충북	(사)사람과경제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	043-222-9001	
충남	(사)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	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벤처밸리 203호	041-415-2012	
전문 기관 (법률)	유한책임회사 더함	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, 1동 510호	02-6384-5500	

* 기초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,
각 기초컨설팅 지원기관 홈페이지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

참고 2

기초컨설팅 추진 절차 및 제출 서류

단 계	수행방법	제출 서류
신청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기관은 신청기업에 참여 안내 ○ 신청기업은 지원기관에 신청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신청기업</div> [별지 제1호] [별지 제2-1호] [별지 제3-1호]
↓		
사전코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기관에서 신청 요건 검토 ○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코칭 실시(통합경영지원 단 내 사전코칭팀) ○ 실시계획서 작성 	[별지 제4호]
↓		
실시계획서 검토 및 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시계획서 제출(지원기관→진흥원) ○ 실시계획서 검토 및 승인(진흥원) 	
↓		
집중코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시계획서에 따른 집중코칭 실시 ○ 방문일마다 수행일지 작성(컨설턴트 또는 멘토) ○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(컨설턴트 또는 멘토→ 지원기관)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컨설턴트 or 멘토</div> [별지 제5호] [별지 제7호]
↓		
모니터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중코칭 완료 시 현장 점검(지원기관)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지원기관</div> [별지 제6호]
↓		
사후코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중코칭이 완료 후 1~3개월이 지난 수진기업 대상으로 사후코칭 실시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컨설팅기관</div> [별지 제5호]
↓		
사업비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흥원 검토 후 지원기관은 진흥원에 대금 청구 ○ 진흥원은 지원기관에 비용 지급 	-
↓		
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진기업 방문 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 	-

참고3

전문컨설팅(특화형) 추진 절차 및 제출 서류

단 계	수행방법	제출 서류
컨설팅기관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부 주제 선정(진흥원) ○ 세부 주제에 적합한 컨설팅기관 선정(진흥원) * 별도의 공고/입찰 절차 	
↓		
신청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컨설팅 신청(신청기업→진흥원)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신청기업</div> 전문컨설팅(특화형) 신청서 회사소개서 개인/기업정보활용동의서
↓		
사전 진단 및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 서류평가, 적합성 진단 *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음 	-
↓		
지원대상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종 지원대상 선정 	-
↓		
계약 체결 및 사업착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진기업-컨설팅기관 간 계약 체결 ○ 착수금 지급(수진기업→컨설팅기관) 확인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수진기업, 컨설팅기관</div> 전문컨설팅 수행계획서 착수확인서
↓		
중간 보고 및 중간(수시)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행일마다 수행일지 작성(컨설팅기관) ○ 중간보고서 제출(컨설팅기관) ○ 현장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 실시(진흥원)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컨설팅기관</div> 수행일지 중간보고서
↓		
완료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완료보고서 제출(컨설팅기관) ○ 완료보고서, 수행일지 등을 근거로 완료점검 실시(진흥원) ○ 만족도 조사(수진기업)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컨설팅기관</div> 결과보고서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 margin-top: 5px;">수진기업</div> 완료확인서 만족도 조사
↓		
사업비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비 지급 통보(진흥원→컨설팅기관) ○ 사업비 지급 신청 및 지급(컨설팅기관, 진흥원) 	-
↓		
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컨설팅 평가 ○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 	-